

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(간소화 컨설팅) 설명자료

□ 추진경과

- 관계부처¹⁾ 합동 해양입지컨설팅 신설 발표(해상풍력 발전방안, '20.7) →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운영지침 마련 및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시행²⁾('22.3~)

1) 산업부, 국방부, 해수부, 환경부

2)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서류로 활용 중

□ 주요 문제점

-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상 40일 이내(최대 54일)에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부처 의견 회신이 6개월 이상 소요
⇒ 사업자의 발전허가 신청을 지연시키는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

□ 개편방안 -간소화 컨설팅 서비스 추가제공

- 통합반에서 수집한 군사·환경·어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소화된 입지컨설팅(정식 명칭 :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, 검토기간 약2주) 제공(6/1~)

<변경 전>	<변경 후 Two-track 운영>	
해양입지컨설팅 (국방부, 해수부, 환경부)	해양입지컨설팅 (국방부, 해수부, 환경부)	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(풍력발전합동지원반)
관계부처를 통하여 국방, 환경, 어업 영향 검토	관계부처를 통하여 국방, 환경, 어업 영향 검토	+ 수집한 군사·환경·어업 데이터를 통하여 영향 검토 (해상교통 컨설팅 내용 포함)

- 사업자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 가능, 발전사업허가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토록 시기 연장

□ 기대효과

- 해상풍력 사업부지 검토기간 단축 가능(기존 5~7개월→2개월)